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문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 978호
개정 2008년 12월 8일 조례 제1003호
개정 2010년 4월 22일 조례 제1097호
일부개정 2011년 4월 18일 조례 제1145호
전부개정 2014년 3월 5일 조례 제1347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7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시설물의 이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외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2장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제3조(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료) 자료의 열람·대출 및 시설물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악기 대여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6>

제5조(변상)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용상 유사한 자료 및 시설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그 운영시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의 이용 및 도서의 대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관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후 변상의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제7조(시설물의 사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익성 및 도서관의 업무상 적합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도서의 대출) 시장은 도서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대출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등록하여 활용하되, 부적합한 자료는 필요한 단체 등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간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적 재해·사고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제12조(자료의 복사 등) ①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원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사 등에 필요한 장비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에 따른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또는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등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사 또는 인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독서계·문화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도서관 사서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경우

- 제1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신축중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예) 별표 중 신축하고 있는 오산시중앙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8 조례 제1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오산시중앙도서관 및 청학도서관은 오산시중앙도서관의 개관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 중 “시립도서관”을 “청학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0. 4. 22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중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예) 별표 중 신축하고 있는 양산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4. 18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중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예) 별표 중 신축하고 있는 초평도서관의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운영에 대하여는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3. 5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축 중인 별표 1의 꿈두레도서관에 대하여는 그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립·운영 중인 도서관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구성·운영 중인 오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12. 26〉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제3조 관련)

도서관명	소 재 지
오산시중앙도서관	오산시 운암로 85(오산동)
청학도서관	오산시 청학로 65(청학동)
햇살마루도서관	오산시 오산로 132번길 28-6(원동)
양산도서관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4(양산동)
초평도서관	오산시 발안로 1353-11(누읍동)
꿈두레도서관	오산시 세마역로 20(세교동)
소리울도서관	오산시 경기대로 102-25(원동)

[별표 2]

수 수 료(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
복사료 (전자복사기)	A4	1매(단면)	40
	B4	1매(단면)	50
인쇄료 (컴퓨터프린터기)	A4	1매(단면)	50

[별표 3] 〈신설 2018. 12. 26〉

악기 대여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악기명	금 액	기 간	비 고
관악기	리코더	5,000원 이하	1개월	운반비 본인 부담
	오카리나			
	색소폰	10,000원 이하		
	트럼본			
	트럼펫			
	클라리넷			
	플루트			
	호른 등			
현악기	기타 (클래식, 전자기타 등)	10,000원 이하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비올라			
	우쿨렐레			
	첼로 등			
타악기	젬베	5,000원 이하		
	팀파니			
	드럼	10,000원 이하		
	피아노(클래식, 전자) 등	30,000원 이하		
국악기	가야금	5,000원 이하		
	거문고			
	쟁과리			
	단소			
	북			
	장구			
	징 등			